

부천옥길 B-2블럭 공공분양 보금자리주택 기관추천 특별공급 알선 공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건설·공급하는 분양주택 중 우리 공단으로 배정되는 일부 세대를 무주택세대주인 공무원 및 연금수급자에게 알선하여 드립니다.

위치 및 공무원 특별공급내역

- 위치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범박동, 옥길동, 계수동 일원
부천옥길 보금자리주택지구내 B2블럭 공공분양
- 공무원특별공급내역

블럭	주택유형	건설호수	발코니 유형	주택형	배정세대	비고	입주 예정시기
B-2	공공분양	1,304	확장	84㎡	2	14개동 13~29층	2016.7

※ 공급가격 : 미정, 입주자모집공고시 확정(2013.10.18.예정)

※ 금번 알선하는 부천옥길B2블럭은 주택형 84㎡의 타입(84A, 84B, 84D)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알선대상자로 선정된 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동호배정시 전산관리업무 담당기관의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됩니다. (사전예약제가 시행된 주택지구)

신청자격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 이상 경과하고, 6회 이상 납부한 자 중 특별공급 알선공고일(13. 10. 8.)을 기준으로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인 공무원 및 연금수급자. 단, 재당첨제한이 적용되는 자는 제외한다.

※ 국토해양부에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령 제225호, 2010. 2.23.)을 개정하여 특별공급 알선 대상자에게 청약저축(또는 주택종합청약저축) 의무가입 조항을 신설. (시행일은 2010.8.24.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하는 아파트부터 적용)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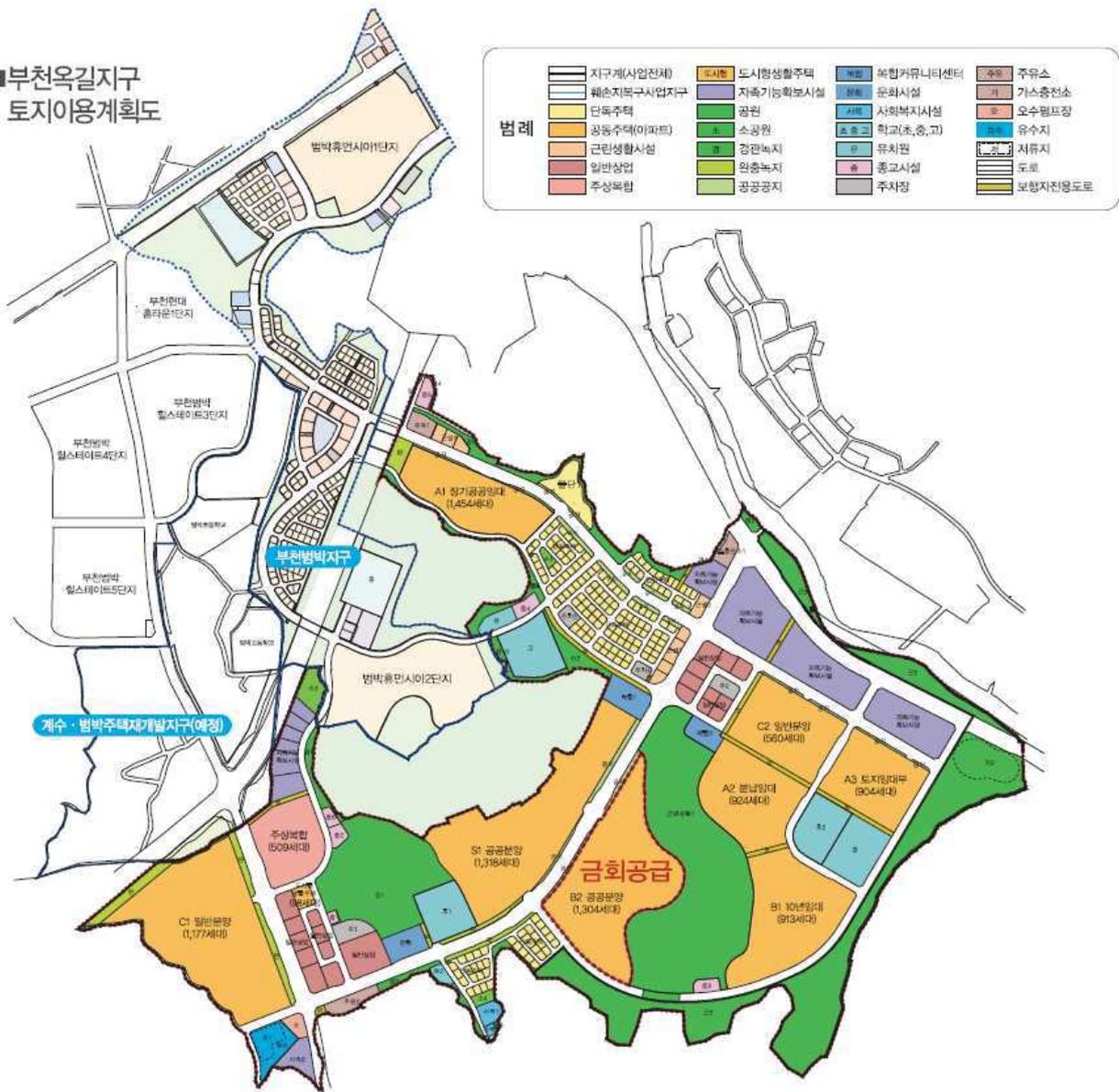
※ 상기 도면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도이므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각종 개발계획 등은 현재 예정 또는 검토중인 내용으로 사업시행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 및 지연,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위치도는 검수과정에서 다소 변경될 수 있음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시 분양 팜프렛을 통해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이용계획도

■부천옥길지구 토지이용계획도



※ 상기 도면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도이므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각종 개발계획 등은 현재 예정 또는 검토중인 내용으로 사업시행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 및 지연,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위치도는 검수과정에서 다소 변경될 수 있음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시 분양 팜프렛을 통해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단지조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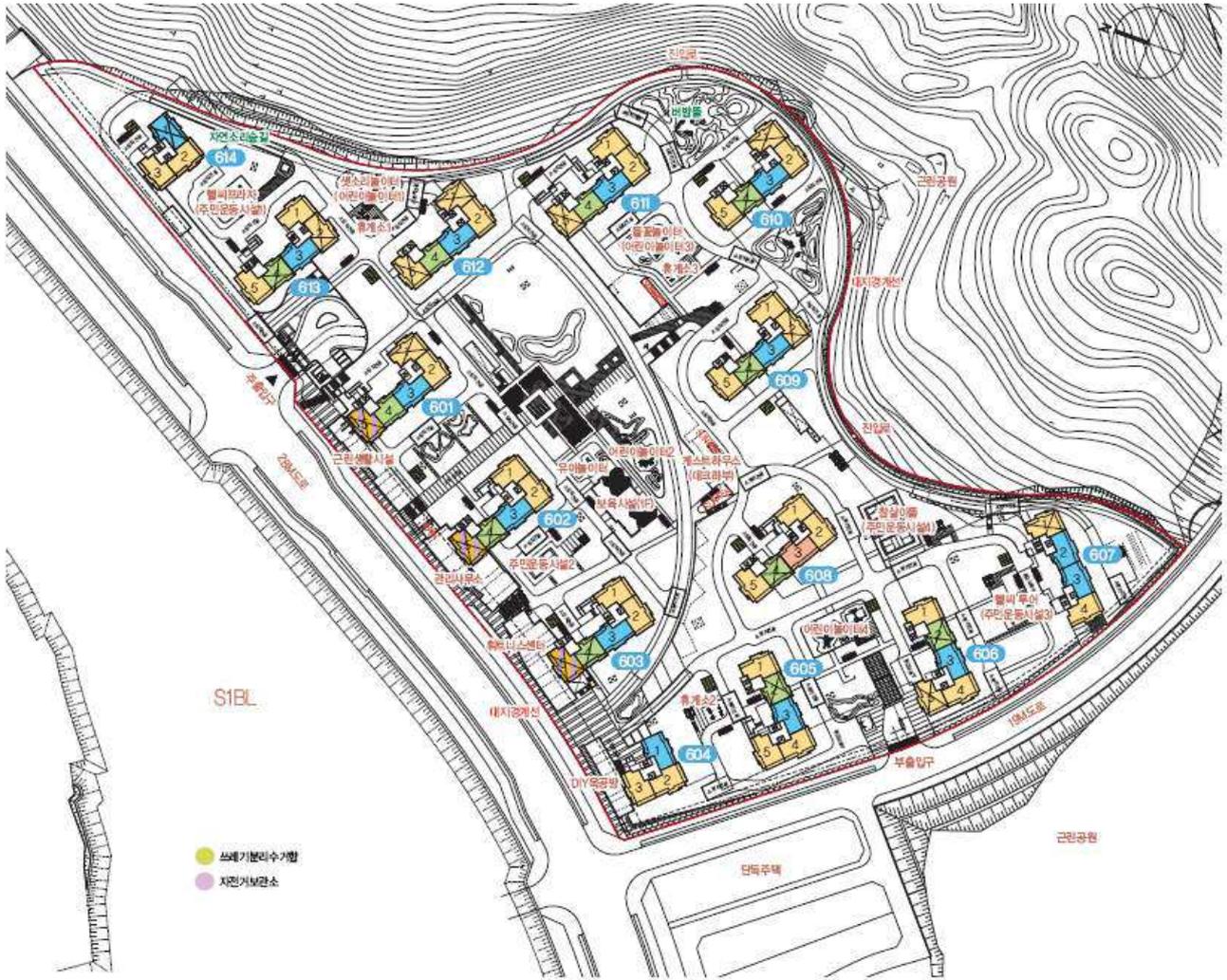


※ 상기 도면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도이므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각종 개발계획 등은 현재 예정 또는 검토중인 내용으로 사업시행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 및 지연,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위치도는 검수과정에서 다소 변경될 수 있음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시 분양 팸플릿을 통해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단지배치도



타입	세대수
74A1/74A3	218세대
81A1/81A3	18세대
84A1/84A3	284세대
84B1/84B3	736세대
84D1/84D3	28세대
84F	20세대
계	1,304세대

- ※ 상기 배치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각 동의 필로티 부분에는 무인택배 또는 자연거보관소가 설치될 예정이나 설치여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상기 배치도의 대지경계선은 최종측량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내부 도로 및 조경선은 실시공시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 유의사항을 필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본 홍보물에 명기된 면적의 소수점 이하 숫자는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2009년 4월 1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공급면적을 주주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으로 표기하였습니다.
- ※ 2007년 7월부터 법정계량단위 사용 의무와 조척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이 시행됨에 따라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중건의 평형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나 신장에 차있을수있길 바랍니다.
[평형환산 방법] 주택형별 면적(㎡)X0.3025 또는 주택형별 면적(㎡)÷3.3058

※ 상기 도면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도이므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각종 개발계획 등은 현재 예정 또는 검토중인 내용으로 사업시행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 및 지연,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위치도는 검수과정에서 다소 변경될 수 있음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시 분양 팜프렛을 통해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평면도

84A



84B



84D



※ 상기 도면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도이므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각종 개발계획 등은 현재 예정 또는 검토중인 내용으로 사업시행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 및 지연,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위치도는 검수과정에서 다소 변경될 수 있음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시 분양 팜플렛을 통해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무주택세대주의 정의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신청 불가

♣ 세대원이란?

- 세대주(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포함)

♣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특별공급알선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세대주가 아닌 자
- 특별공급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수도권**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
- 특별공급알선공고일 현재 동일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직계존비속 세대원 중 주택을 소유한 자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자(인터넷사이트 www.ap2you.com에서 당첨사실조회가 가능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19조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과거 3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자 포함)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 우리공단에서 공급(분양 또는 임대)알선대상자로 선정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통보된 후 특별공급신청을 하였던 자(계약체결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사실이 있는 자)

♣ 신청자격에 청약저축(또는 주택종합청약저축) 가입요건 추가

- 관련 규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주택의 특별공급)

① 사업주체가 국민주택 등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련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1회에 한정하여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특별공급 할 수 있다.

6. 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에 예탁된 연금기금 또는 자금을 적립한자.

⑭ 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 제4호의2 및 제7호를 제외한다), 제2항, 제4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 받고자 하는 자는 법제75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저축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신설 2010.2.23>

1.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

알선대상자 선정기준 등

■ 선정방법

: 공무원 특별공급호수보다 신청공무원이 많을 경우에는 알선대상자 선정기준에서 정한 순위별 대상자 선정

◦특별공급호수 < 신청공무원수 : 알선대상자 선정기준에서 정한 순위별로 대상자 선정

◦특별공급호수 > 신청공무원수 : 신청공무원 모두 대상자로 선정

■ 선정기준

◦ 순위표

순위	대 상 자	비 고
1순위	무주택공무원	공단으로부터 분양받은 사실이 없는 자
2순위	무주택공무원	공단으로부터 분양받은 사실이 있는 자 포함
3순위	무주택 연금수급자	

※ 동일순위 내에서는 신청자의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재직기간에 따른 점수의 합으로 순위 결정

◦ 점수제 적용기준

가.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 1) 특별공급알선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신청공무원을 포함한 세대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 전원이 주택을 소유(주택의 공유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신청공무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2) 무주택기간은 신청공무원과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신청공무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신청공무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나.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 1) 부양가족은 특별공급알선공고일 현재 신청공무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를 포함)]으로 한다. 다만, 신청공무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본다.
- 2) 신청공무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특별공급알선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신청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3) 신청공무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특별공급알선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신청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 공무원 재직기간 적용기준

- 1) 특별공급알선공고일 현재 신청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점수제 산정 기준

배점항목	배점	배점기준	점수	배점기준	점수
계	100				
① 무주택 기간	35	1년 미만	0.5	8년 이상~9년 미만	18.9
		1년 이상~2년 미만	2.8	9년 이상~10년 미만	21.2
		2년 이상~3년 미만	5.1	10년 이상~11년 미만	23.5
		3년 이상~4년 미만	7.4	11년 이상~12년 미만	25.8
		4년 이상~5년 미만	9.7	12년 이상~13년 미만	28.1
		5년 이상~6년 미만	12.0	13년 이상~14년 미만	30.4
		6년 이상~7년 미만	14.3	14년 이상~15년 미만	32.7
		7년 이상~8년 미만	16.6	15년 이상	35.0
② 부양 가족수	30	0명(신청자 본인)	6	4명	22
		1명	10	5명	26
		2명	14	6명이상	30
		3명	18		
③ 공무원 재직기간	35	1년 미만	2	17년 이상~18년 미만	19
		1년 이상~2년 미만	3	18년 이상~19년 미만	20
		2년 이상~3년 미만	4	19년 이상~20년 미만	21
		3년 이상~4년 미만	5	20년 이상~21년 미만	22
		4년 이상~5년 미만	6	21년 이상~22년 미만	23
		5년 이상~6년 미만	7	22년 이상~23년 미만	24
		6년 이상~7년 미만	8	23년 이상~24년 미만	25
		7년 이상~8년 미만	9	24년 이상~25년 미만	26
		8년 이상~9년 미만	10	25년 이상~26년 미만	27
		9년 이상~10년 미만	11	26년 이상~27년 미만	28
		10년 이상~11년 미만	12	27년 이상~28년 미만	29
		11년 이상~12년 미만	13	28년 이상~29년 미만	30
		12년 이상~13년 미만	14	29년 이상~30년 미만	31
		13년 이상~14년 미만	15	30년 이상~31년 미만	32
		14년 이상~15년 미만	16	31년 이상~32년 미만	33
		15년 이상~16년 미만	17	32년 이상~33년 미만	34
16년 이상~17년 미만	18	33년 이상	35		

특별공급 알선신청서 접수

- 1인1세대만 신청가능(중복신청불가)
- 신청접수기간 : 2013. 10. 14.(월) 9:00 ~ 18:00
 - ※ 접수기간내에 접수된 것만 신청접수 건으로 인정됩니다.
- 인터넷 신청절차 및 접수방법

1.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 접속
2. 내연금보기 클릭 후, 왼쪽 하단의 고객지원시스템 선택
3. 고객지원시스템 사용자 로그인(회원이 아닌 경우 회원가입 후 로그인)
4. 주택분양/임대 중 주택분양의 '분양신청서' 작성 선택
5. 무주택서약서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작성
6. 국민주택 알선신청자료 입력

※ 반드시 '특별공급 알선 인터넷 신청 매뉴얼'을 숙지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알선대상자 선정 및 통보

■ 제출서류 (최종 알선대상자로 선정 전에 공단에서 별도로 유선요청 합니다.)

1.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사본 1부.(신청자 본인 명의, 6개월이상 납입사실 확인)
2.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입주자알선공고일 이후 발행분)
3. 건물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관리대장) 각1부(주택소유사실이 있는 경우 최근 에 처분한 주택에 한함)
4. 가족관계증명서 1부(아래 해당자에 한해 입주자알선공고일 이후 발급분 제출)
 - 배우자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 미혼자 또는 배우자가 없는 세대주
5. 혼인관계증명서1부(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에 한함)
6. 분양당첨사실 확인서 1부(알선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만 제출)

※ 본인·배우자·세대원의 주민등록등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제출은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통보일시 : 2013. 10. 21. (월) 예정

■ 통보방법 : 유선통보

(알선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만 개별통보하며, 탈락자는 별도 통보 없음)

※ 알선대상자로 결정된 후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분양일정(접수 및 계약체결 등)에 따라야함.

한국토지주택공사 분양 일정(예정)

■ 입주자모집공고 : 2013년 10월 18일 예정(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참조)

■ 분양일정 및 장소

구분	입주자모집공고	접수일자
일시	2013년 10월 18일 (예정)	2013년 10월 25일 (예정)
장소	일간신문 및 공사홈페이지 (http://myhome.lh.or.kr)	내부천옥길 분양홍보관 방문접수 (인터넷 청약접수 불가) ☎ 032-347-0003

- 신청한 주택형의 동 호수 배정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분양 담당기관의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함(미신청·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변경 불가)
- 신청 및 계약체결시 구비서류 등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로 확인하시고, 특히 신청시에는 일반 청약자와 혼동이 될 수 있으니 신청장소 현장에서 공무원 특별공급알선대상자로 신청하는 사실을 알려주시거나, '특별공급 신청서'를 배부받으시길 바랍니다. (알선대상자로 선정된 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접수시에 한함)

유의사항

- 우리공단의 임대주택(공무원임대아파트)에 입주하고 계시거나 입주하였던 사실은 주택사업 수혜로 보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알선대상자로 선정되면 우리 공단에서 주택사업 수혜를 받은 것으로 관리되어, 향후 우리 공단의 임대주택에 영구히 입주하실 수 없으며, 우리 공단의 분양주택이나 특별공급알선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순위가 2순위 또는 3순위로 변경됩니다.
- 특별공급 알선대상자로 선정되기까지는 알선신청을 철회할 수 있으며, 신청 철회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 공무원 특별공급 알선대상자로 선정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특별공급 분양신청을 할 경우, 일반공급주택에 청약 불가하며 중복 당첨될 경우 2건 모두 계약 불가 및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알선대상자로 선정된 후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되며, 계약이 불가합니다.